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59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완화 등	2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21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3.
- (3) 회 부 일 : 2024. 7.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완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i) 식품접객업 등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ii)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 iii)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벌칙(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 ----- -----.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u>제37</u>	1. ----- ----- <u>제37</u>

<u>조제3항 · 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 · 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u> 2. ~ 5. (생략) 6. <u>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u> 7. ~ 10. (생략)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1. ~ 4. (생략) <u><신설></u>	<u>조제4항, 제48조제2항 · 제10항 또는 제49조제1항 단서---</u> ----- ----- 2. ~ 5. (현행과 같음) 6. <u>제44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u>----- -----. -----. 7. ~ 10. (현행과 같음) 제98조(벌칙) ----- ----- ----- -----. 1. <u>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u>제99조(벌칙) 제55조를 위반하여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입법배경)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성이 적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충성·비례성 등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45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16개 법률안¹⁾을 제출하였는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량을 하향 조정하거나 기존 행정제재 활용 등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임.

□ (형량 조정) 현행 「식품위생법」 ① 제37조제3항²⁾은 식품접객업 등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② 제39조제3항³⁾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제55조⁴⁾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

1) 일괄개정 방식 9건, 개별법에 대한 일부개정 방식 7건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39조(영업 승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①, ②, ③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①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⁶⁾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③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형벌수준 완화 주요 내용]

구 성 요 건	현 행	개 정 안
① 허가받은 영업의 폐업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3항)	“	“
③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제55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법 제97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5)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자가품질검사(제31조) 미 실시, 시설기준(제36조) 위반, 영업자 준수 사항(제44조) 위반, 영업정지·제조정지 명령(제75조, 제76조) 위반, 식중독에 관한 조사(제86조) 거부·방해·기피 등 “식품 위생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반행위” 외에

개정안에서 적시하고 있는 ① 폐업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신고, ② 영업승계의 미신고, ③ 조리사가 아닌 자의 조리사 명칭 사용 등 식품 위생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벌칙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신고의무 위반(①, ②)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고의무 위반 ①(폐업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신고)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②(영업승계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영양사 명칭 사용 위반의 경우에도 「국민영양관리법」⁷⁾에서 개정안과 같은 법정형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7) 「국민영양관리법」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벌칙)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식품접객업 등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폐업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한 자의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신고를 한 자의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아지게 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영업자 성명 또는 영업소 명칭 등의 변경신고 미이행 시, 영업허가 업종(유흥주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에 대한 법정형이 영업등록 업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신고 업종(일반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영업자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아지게 됨.

[현행 식품위생법 업종별 법정형 현황]

업종		구분	변경사항	법정형	근거조문
영업 허가	유흥주점 영업,	허가 + 중요사항 변경허가	소재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1항 법 제94조
	단란주점 영업, 식품조사 처리업	허가사항 중 <u>경미한 사항 변경신고</u>	<u>영업자 성명</u> <u>영업소 명칭</u> <u>영업장 면적</u>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u>1천만원 이하의 벌금</u>	법 제37조제3항 법 제97조
영업 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 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 중요사항 변경등록 + <u>경미한 사항 변경신고</u>	(중요) 소재지 (경미) <u>영업자 성명</u> <u>영업소 명칭</u> <u>영업장 면적</u>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5항 법 제95조
영업 신고	휴게음식 점 영업, 일반음식 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등	신고 + <u>중요사항 변경신고</u>	<u>소재지</u> <u>영업자 성명</u> <u>영업소 명칭</u> <u>영업장 면적</u>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 법 제97조

□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한 벌칙 삭제) 현행법 제 44조제1항8)에서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8)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营业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

증진을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현행법 제75조제1항9)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고, 제97조¹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의 경우 식품 위생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에 비하여 그 처벌수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현행 행정제재 처분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현행 행정제재 처분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하.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3)·4), 하목, 어목 또는 로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¹¹⁾하고 있어, 다중이 모이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스러운 호객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폐업 및 변경사항의 신고 벌칙 입법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자

8.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 영업승계 미신고 벌칙 입법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영업의 승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의 승계)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영업의 승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모자보건법」

제2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493